

한국노년학회와 일본노년사회과학회의 학술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각서(안)

日本老年社会科学会及び韓国老年学会間における学術交流プログラムに関する覚書（案）

한국노년학회와 일본노년사회과학회의 학술교류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의 노년사회과학 분야에 관련된 연구활동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그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日本老年社会科学会及び韓国老年学会間における学術交流プログラムは、日本及び韓国における老年社会科学の分野における研究活動の推進を目的とし、以下のとおり合意するものとする。

1. 학술연구모임에 연구자를 초빙하는 일

1. 学術研究集会への研究者の招聘

1) 일본노년사회과학회는 매년 개최하는 일본노년사회과학회 학술대회에 한국노년학회로부터 추천된 연구자 1명을 초빙한다.

1) 日本老年社会科学会は、毎年開催される日本老年社会科学会大会に韓国老年学会から推薦された研究者1名を招聘する。

2) 한국노년학회는 매년 개최하는 한국노년학회 학술대회에 일본노년사회과학회로부터 추천된 연구자 1명을 초빙한다.

2) 韓国老年学会は、毎年開催される韓国老年学会大会に日本老年社会科学会から推薦された研究者1名を招聘する。

3) 초대하는 국가의 학회는 상대국가로부터 추천된 연구자가 초대국가의 학술대회에서 연구발표(발표형식은 구두 또는 포스터이며, 발표 시 사용언어는 영어 또는 초빙국가의 언어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招聘する側の学会は、対応国より推薦された研究者が大会において研究発表(口頭またはポスター/使用言語:英語および招聘国側言語)を行う機会が得られるよう務める。

4) 상대국가 학회로부터 추천된 연구자를 위한 경비는 학술대회 기간(학술대회개최 하루 전부터 학술대회 종료일 다음 날 오전까지임) 동안 숙식이나 현지 교통비 등 모두를 초빙국가에서 부담하지만, 해당국가와 초빙국가를 왕복하는 항공료는 제외한다.

4) 推薦された研究者の旅費(出発地から大会開催地までの航空費)は、派遣側が負担し、大会前泊を含む宿泊費および現地交通費のすべての滞在費用は招聘側が負担する。

5) 또한 사용언어는 영어 또는 초빙국측 언어로 한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발표자가 준비한다.

5) なお、使用言語は、英語または招聘国側言語とする。通訳が必要な場合は、発表者が準備する。

6) 초대받은 연구자가 발표 내용을 초빙국가 학회의 학술지 게재를 원할 경우 영어 또는 초빙국가의 언어로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推薦された研究者が発表した研究については、それぞれの機関誌において英語または招聘国側言語により掲載できるよう務める。

2. 연차대회 참가

2. 年次大会への参加

양국 학회의 회원들도 상대국가 학회의 연차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일체의 비용은 참가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또 학술대회 참가비는 상대국가 회원과 동일하게 한다.

両学会の会員は、双方の学会の年次大会に参加し、発表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参加にかかる経費一切は、参加者個人が負担するものとする。なお参加費については、双方の会員費用と同等とする。

3. 공동연구의 추진

3. 共同研究の推進

노년사회과학에 관한 연구교류의 증진을 위해 양국 학회는 공동연구를 기획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老年社会科学に関する研究交流を深めるため、両学会は、共同研究の企画について協議する場を設けることができる。具体的要領は次のとおりとする。

1) 양국 학회는 각자 공동연구 추진을 담당하는 자를 정하고, 양국 담당자끼리의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기획의 구체적인 안을 정하며, 양국 학회의 이사회에 그 안을 제안하여 동의를 얻어서 공동연구를 실시한다.

1) 両学会は、それぞれに担当者を定め、担当者の意見交換を踏まえて共同研究企画の具体案をまとめ、それぞれの学会理事会に提案し、合意を得て企画実施を図るものとする。

2) 공동연구를 실시했을 때 그 결과 등을 각국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2) 実施された共同研究はそれぞれの学会の大会において、研究報告を行う機会を得られるよう、適切な企画を組めるように務める。

3) 공동연구 기획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자의 비용은 출발지에서 회의 개최지까지의 왕복 교통비는 파견국 측에서 부담하지만, 회의 전날 숙박을 포함한 숙박비와 현지교통비 등의 모든 체재비용은 초빙국가의 학회가 부담한다. 학술대회에서 관련된 연구를 보고하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企画協議会への代表者の旅費（出発地から会議開催地までの交通費）は派遣側が負担し、会議前泊を含む全宿泊や現地交通費等の全ての滞在費用は招聘側の学会が負担する。大会における研究報告についても同様の取り扱いとする。

4) 연구보고서는 양국 학회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게재 시 언어는 영어 또는 학술지 발간 국가의 언어로 한다.

4) 研究報告書については、それぞれの機関誌において英語または相手国側言語により掲載できるよう務める。

4. 본 각서의 기한 및 개정과 폐기

4. 本覚書の期限および改廃

1) 본 각서의 유효기간은 조인하는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양국 학회의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本覚書の有効期限は、調印の日から2年間とする。ただし、両学会の合意により期限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2) 양국 학회의 어느 한쪽이라도 본 각서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양국 학회의 협의 하에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両学会のいずれかが本覚書の改正または廃案が必要であると判断したときは、両学会の協議に基づいて改正または廃案することができる。

부 기: 담당사무국 및 연락처

付 記: 担当事務局および連絡先

1) 본 각서에 관한 일본노년사회과학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1) 本覚書に関する日本老年社会科学会の事務を担当する事務局の連絡先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162-0825 東京都新宿区神楽坂4-1-1 オザワビル (株) ワールドプランニング内

Tel : 03-5206-7431 Fax : 03-5206-7757

E メールアドレス : rounenshakai.center@nqfm.ftbb.net

2) 본 각서에 관한 한국노년학회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연락처는 임원의 임기에 맞추어 1년마다 개정하며, 한국노년학회 제 22대 회장 재직 시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2) 本覚書に関する韓国老年学会の事務を担当する事務局の連絡先は、役員任期に併せ

1年ごとに定める。(韓国老年学会第22代会長団の事務局の連絡先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121-790 910 Metro DioBldg, Shingongdeok-dong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 070-8274-2100 Fax : 02-701-0840

E-mail address : eic2010@naver.com

2010년 10월 23일

한국노년학회 韓国老年学会

会 長 尹 嘉 鉉

일본노년사회과학회 日本老年社会科学会

理事長 長 田 久 雄